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0
----------	------

제출년월일 : 2007년 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조)

### 3. 관계법령 : 불임

### 4. 의안전문 : 불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첨부 근거법령 1부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u>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u>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u>」</p> <hr/> <hr/> <hr/> <hr/>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7.4.5 대통령령 제19995호]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51호]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